

붙임. 5) 기타 안내사항

## 장애인 지원자 편의 지원사항

- 채용 지원자 중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는 편의지원 신청절차를 통해 채용 과정 중 편의지원 가능
- 일반전형(장애인), 사회형평적 인재(장애인) 제한전형 합격자에 한해 본인 요청 시 ‘근로지원인 서비스’ 신청 가능(한국장애인고용공단)

### [ 편의지원신청절차 ]

원서접수 시 편의지원 제공 안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원서 접수 시,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안내 내용을 참조하여 본인의 해당사항 확인</li> </ul>
장애 응시자 편의지원 제공 신청, 증빙서류 제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원서 제출 시, 장애인 편의제공 신청 란에 본인이 제공 받고자 하는 편의지원 기재 및 편의지원에 필요한 증빙서류가 필요한 경우 원서접수 종료일 전까지 제출</li> </ul>
증빙서류 확인, 편의지원 제공 여부 게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증빙서류 확인 및 제공 필요여부 검토 후 유선 등을 통해 편의지원 제공 내용 통보 및 세부사항 안내</li> </ul>

### [ 편의지원 가능 장애유형, 증빙서류 ]

유형	신체적 장애 → 외부기관의 장애 → 지체, 뇌병변, 시각, 청각
증빙서류 (의사진단서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 및 이를 준용하는 법률에 의한 장애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장애 유형별 해당 전문의가 발행한 장애진단서</li> <li>※ 진단서는 「의료법」 제3조에서 정한 종합병원 또는 상급종합병원 (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: <a href="http://www.hira.or.kr">www.hira.or.kr</a> 에서 확인가능) 에서 공고일 기준 2년 이내에 발급된 경우 유효</li> </ul>
편의지원 예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의사전달보조요원(수화통역사 등)</li> <li>◦ 전담도우미</li> <li>◦ 기타</li> </ul>

※ 장애의 증경증여부는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 기준을 적용